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5. 11 선고 2021가단510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변론 종결2022. 3. 23.

판결 선고2022. 5.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2.
11. 접수 제60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1. D을 운영하는 소외 C과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C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가 C에게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액은 2020. 1. 31.을 기준으로 하여 1,262,696,777원이다(이하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20. 2.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위 목록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20. 2.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제1 내지 4번 각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E조합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21. 6. 23., 이 사건 제5번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21. 7. 19. 각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액은 2020. 1. 31.을 기준으로 하여 1,262,696,777원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2. 11. 이전에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2. 11. 당시 C의 재산상태가 아래의 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극재산(1,930,967,815원)이 적극재산(865,473,449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D에 대한 영업권의 가치를 감안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운영하던 D의 부지 및 공장에 대해 2019. 11. 28. 부동산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2. 11.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6. 15. 위 부지 및 공장이 제3자에게 500,100,000원에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은 D의 영업권의 가치[423,681,000원(= D 소재지 부동산의 매각대금 500,100,000원 -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76,419,000원)]를 감안하더라도 2020. 2. 11. 당시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극재산]

1	토지	익산시 I 대 165m ²	163,300,000
2	건물	익산시 I 시멘블록조 단층주택 17.98m ²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04m ²	
3	토지	익산시 J 잡종지 13m ²	24,966,000
4	토지	익산시 K 잡종지 79m ²	
5	토지	익산시 L 전 220㎡ 중 지분 220분의 171(C 지분 전부)	
6	집합건물	M에 있는 N아파트 O호	101,000,000
7	집합건물	M에 있는 N아파트 P호	101,000,000
8	건물	익산시 Q 지상 위험물 저장소 49m ² 및 20m ²	31,464,000
9	영업권	D에 대한 영업권	423,681,000
10	채권	유한회사 R에 대한 채권	12,793,407
11	채권	S에 대한 채권	7,269,042
합계	865,473,449		

[소극재산]

1	신용보증기금	211,800,000
2	원고	1,262,696,777
3	T은행	196,666,677
4	주식회사 U	94,283,008
5	E조합	84,000,000
6	주식회사 G	18,319,728
7	근로복지공단	63,201,625
8	B(피고)	119,000,000
합계	1,930,967,815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이 화약구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C에게 2013. 2. 20. 2500만 원, 2014. 4. 29. 2400만 원, 2014. 10. 30. 7000만 원 합계 1억 1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C이 정상적으로 D를 운영하고 있을 당시 대여금의 지급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2020. 2. 11. C과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20. 2. 11.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의 위 주장에 따라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인의 채권자 중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고,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가 C에게 신규로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C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을 것이고, 아울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제1 내지 4번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E조합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11,000,000원과 39,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청구금액을 211,800,000원,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가압류결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③ 피고는 C에게 마지막으로 금원을 대여한 2014. 10. 30.로부터 5년 이상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C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5번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졌던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제6, 7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제6, 7번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2. 11. 접수 제60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원호

별지